

계룡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안년월일 : 2003. 11. 10.

제안자 : 강홍식 의원외 2 인

1. 제안이유

- 계룡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등, 위촉기간, 겸임금지 및 결격, 대표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6조)
- 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협조, 검사의견서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다. 일비의 지급, 일비의 계산, 여비의 지급, 일비·여비의 지급기준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정수) ①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위원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시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일비·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일 비	7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4급 상당액

[별지 서식]

위촉장

○○○

계룡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의 회 의 장 (인)